PL보험 안내

Risk Management Service INTOS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
3. PL보험 사고 및 보상 사례
4. 제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5. 제조물보증배상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Ins.)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

생산물위험 관련 기업의 Claim 유형

제조물배상책임 Claim (Product Liability Claim)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회수 Claim (Recall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의 회수와 관련한 손해
  차량수리, 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각종 비용손해 / 이미지회복비용

보증책임 Claim (Warranty Claim)
-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차량자체의 손해
- 차량수리 또는 교체비용, 사용손실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계속)

담보위험별 적용 보험상품

구 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요약)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 손해배상금 및 방어(소송)비용
생산물회수 비용보험	생산물의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의 회수(Recall)조치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재정적 손실 → 수리,교체비용 / 회수를 위한 비용손해 / 이미지회복비용 등
생산물보증 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의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의 재정적 손실 → 제거,수리,교체비용/ 사용손실 (선택담보)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계속)

보험상품별 담보위험 비교

담보위험 / 보험종류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생산물의 사용손실	생산물의 회수비용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	×	○
생산물보증 배상책임보험	○ × (회수)	○	×	×
생산물회수 비용보험	△ (회수에 한정)	×	○	×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개 념

-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재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즉,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대상

- 가입업체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자기명의 판매업자 등
- 가입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PL관련 손해

■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손해배상금	- 피해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와 관련한 합의금 / 판결금 <신체상해> - 상해에 따른 치료비, 장해 또는 사망시의 소득상실. - 정신적 위자료 및 기타 비용손해 <재물손해> - 재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및 사용손실 - 재물의 멸실에 대한 교환가치
사고처리 비 용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검사 및 비용, 외부전문가 비용, 소송비용 등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상하는 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금 또는 법정판결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제반 사고처리비용

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

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면책사항

■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주요 면책사유)

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Intentional Act)
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가중부담하는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다.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업무중에 입은 신체장해(Worker's Compensation)
라. 제품 또는 그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Property Damage to the Insured's Product)
마. 환경오염 배상책임 (Environmental Liability)
바. 리콜비용 (Recall)
사.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Punitive Damage)
아. 전쟁, 천재지변 등 (War)
자. 원자력핵물질, 방사능 위험(Nuclear Liability)
차.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의 재물손해(Care, Custody, or Control)
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 (Impaired Property)
타. 주류배상책임(Liquor Liability) 등

@PL Risk Management Service Center -Intos-

PL Risk Survey	- 과학적인 PL 위험관리Survey을 실시 - 고객 PLP참고자료 및 보험설계 자료
PL Insurance	- PL Risk Survey에 기초하여 - 가장 효율적, 경제적인 보험프로그램 설계
PL Claim Service	-PL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방어업무 대행 -통합 사고기록관리 및 Feed-Back
PL Counseling	- PLP, 사고처리 및 대고객관계 - 상시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제공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가입의 효과

▣ 경영안정성 제고
-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 => 수익의 불안정, D&O위험
- 비교적 고정적인 보험료비용으로 전환 => 수익구조의 안정성

▣ PLD(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아웃소싱 => 비용절감
- 자체적으로 PL방어대책(조직 및 제도) 수립시 막대한 비용발생
- 반면, PLD조직이 없는 경우 사고발생시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
- 보험사의 PLD조직 활용 : PL컨설팅, 법률자문, 사고처리, 소송방어 등.

▣ 대고객 이미지 제고
- 불량제품은 보험가입 거절 => 보험가입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안전성 인정
- 고객의 신뢰도 향상

▣ 경영효율성 증대
- 제조물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력 증가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손해사정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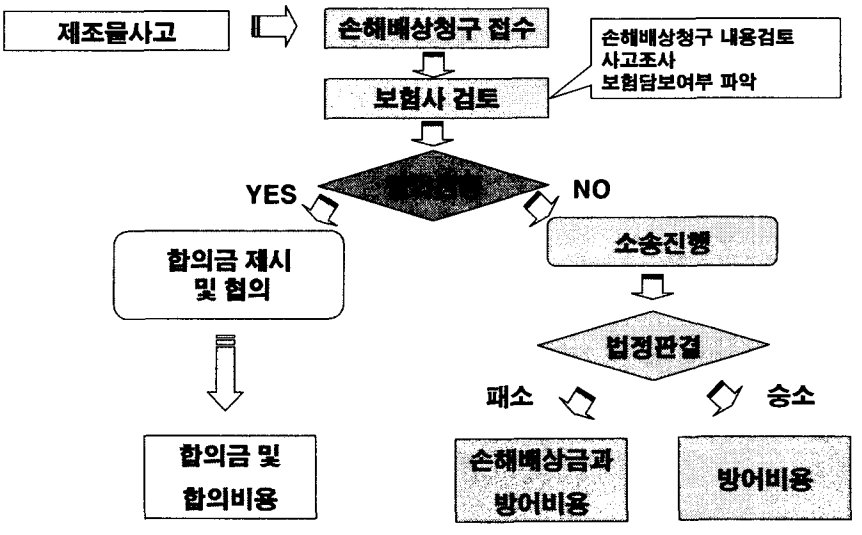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손해사정서비스

■ 보험회사의 역할
- 사고경위 조사
-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응
- 사고원인 및 제조물결함 여부 조사 : 외부전문가 등 활용
- 피해자의 치료과정 / 재물수리상황 관리
- 법률상 배상책임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 피해자와의 합의협상 대행
- 전문변호사 소개
- 소송방어전략 개발
- 소송진행 및 소송비용 관리
- 판결내용 및 승복/항소여부 검토

■ 피보험자(제조업체)의 역할
- 방어자료의 수집 : 설계, 제조관련 문서 등
-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섭외
- 보험사와 협조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약관의 종류

(1) 국내 생산물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생산물특별약관 (손해사고기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생산물특별약관 (배상청구기준)*

(2) 해외 수출품 : USA 및 세계전지역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I)-Occurrence-made Basis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II)- Claim-made Basis*

(3) 기업 패지지 종합보험 :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와 Package Policy의 Section IV
-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Tailor-Made형태로 종합적으로 Cover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배상청구기준 증권 VS. 손해사고기준 증권

▣ 손해사고기준 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보험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사고발생시점의 보험사가 사고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고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발생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음

▣ 배상청구기준 증권 (Claim-made Basis Policy)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Claim)이 제기된 경우 보상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이 장기화)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질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명확.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가. 손해사고기준 증권(Occurrence-made)

예) H전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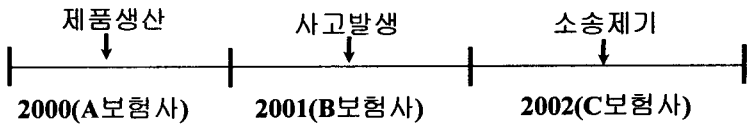

질문) A, B, C중 어느보험사가 담보하는가?

문제점) - 손해사고일자의 불분명성
- 보상한도액의 현실성 결여
- 배상책임보험의 위기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나. 배상청구기준 증권(Claims-made)

예) H전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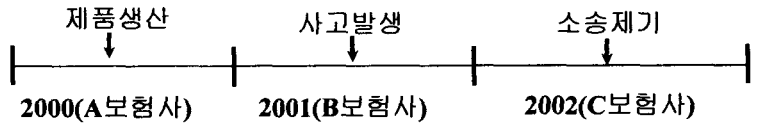

예) K공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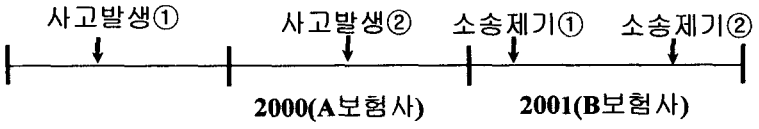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소급담보일자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말함.
보통 최초보험가입일자를 "소급담보일자"로 정하며, 보험갱신시 1차년도 증권의 보험가입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함

■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Date)

-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에 있어서 1차년도 보험이 만료된 이후 2차년도에 보험을 갱신가입하지 못할 경우, 1차년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가 1차년도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연장담보기간"을 두고 있음.
- 보통 보험계약에서는 "보고연장담보기간" 통상 60일 정도의 기간내에서 설정함.

(단기자동연장/ 중기자동연장/ 선택자동연장 담보)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보상하는 사고

즉, 적용대상 사고는
첫째, 소급적용일자이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것이며,
둘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중에 제기된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함.
그러므로,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 및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보험기간 종료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도 담보대상이 아님.

※ PL사고의 특성상 제조물이 완성(제조)되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사고일자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후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PL보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 적용이 타당함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 개념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최대 보험금액의 한도액이며,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발생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상한도액의 설정방법

1) 손해사고기준 증권의 경우
   ① 하나의 사고당 (Any one occurrence)
      : 1회의 사고당 보험사의 보상한도액
   ② 총보상한도액 (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2) 배상청구기준 증권의 경우
   ① 하나의 청구당 (Any one claim)
      : 피해자가 제기하는 1회의 배상청구당 보험사의 보상한도액
   ② 총보상한도액 (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주요 사항 이해

■ 공제금액 (Deductible)

■ 개념

공제금액은 하나의 사고당(손해사고기준증권) 또는 하나의 청구당 (배상청구기준증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 손해배상금 이외 방어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설정기준

공제금액은 피보험자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로 설정하며, 특히 예견가능하며 잦은 손해규모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Territory & Jurisdiction)

■ 개념

담보지역은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이며, 관할법원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판결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법원을 의미함.

■ 설정기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지역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PL보험 사고 - 손해배상청구의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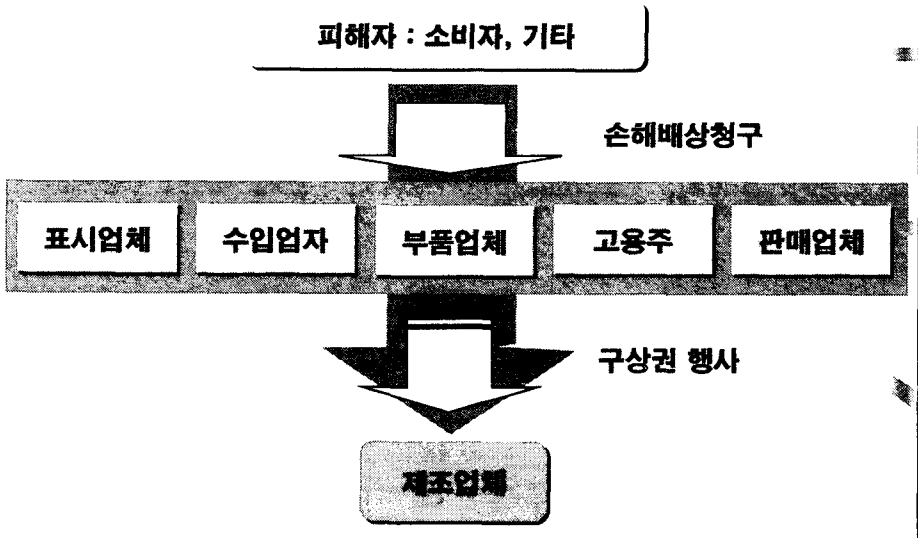

3. PL보험 사고 - PL사고의 특징

■ PL사고의 특징
- 전문성 : 사고조사 및 해결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
- Long-Tail :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
- 고비용 : 손해배상금외에 사고처리비용 및 인력소요
- 연속적인 손해배상청구

■ 미주 PL클레임의 특징
● Punitive Damage
- 실제 손해배상금의 수배 또는 수십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 배심원 제도
- 제조물책임의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막대한 소송비용
- 디스커버리제도에 기인
- 제조업자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발생
● 변호사의 성공보수제도 : 소송제기가 용이

3. PL보험 사고 - 보상사례 국내 1

■ 보험계약사항
- 생산물 : Flexible Rubber Joint (매출액:5억원)
- 보험조건 : 보상한도 3억원, 공제금액 30만원
- 보험료 : 1,843,000원 (2000.4)

■ PL사고 내용
- 사고경위 : 2000.5 기계실의 배관에 장착된 Flexible Rubber Joint가 파열되어, 기계실이 침수된 사고임
- 손해사항 : 기계실내 각종 기계의 파손
- 사고원인 : 제품 설계상의 결함 (내구성의 결함)

■ 보험금지급 사항
- 처리결과 : 보험사의 중재따라 피해자와 합의 종결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 13,000,000원
- 사고조사비용 : 1,200,000원

3. PL보험 사고 - 보상사례 국내 2

■ 보험계약사항
- 생산물 : 전기매트 (매출액:3억원)
- 보험조건 : 보상한도 1억원, 공제금액 30만원
- 보험료 : 1,06,000원 (2001.2)

■ PL사고 내용
- 사고경위 : 2001.4 가정집에서 전기매트를 사용중 과열로 화재가 발생,
- 손해사항 : 가재도구 소손 및 여자1명 화상
- 사고원인 : 제조상의 결함 (온도센서의 손상)

■ 보험금지급 사항
- 처리결과 : 보험사의 중재따라 피해자와 합의 종결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 5,500,000원
- 사고조사비용 : 900,000원

3. PL보험 사고 - 보상사례 국내 3

■ 보험계약사항
- 생산물 : 동파방지히터 (매출액:3억원)
- 보험조건 : 보상한도 1억원, 공제금액 30만원
- 보험료 : 1,843,000원 (2000.4)

■ PL사고 내용
- 사고경위 : 2000.11 ~ 2001 .2 공조실 등에서 설치사용중인 동파방지히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가 4회 발생.
- 손해사항 : 건물 소손 등
- 사고원인 : 제품의 제조 설계상의 결함 (과열위험 상존)

■ 보험금지급 사항
- 처리결과 : 보험사의 중재따라 피해자와 합의 종결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 20,000,000원(총4건)
- 사고조사비용 : 3,500,000원

3. PL보험 사고 - 보상사례 해외 1

■ 보험계약사항
- 생산물 : 자동차 타이어 (국내제조업자 미주수출품)
- 보험조건 : 보상한도 $700만, 공제금액 $30만
- 보험료 : $1,150,000원 (2001.9)

■ PL사고 내용
- 사고경위 : 1999.10 미국 텍사스에서 차량운행중 타이어가 파열되어 차량전복
- 손해사항 : 운전자(여, 34세) 사망
- 사고원인 : 타이어 디자인 결함 및 차량의 결함
- 청구금액 : $750만

■ 보험금지급 사항
- 처리결과 : 텍사스법원에 2000.5 소송제기하여, 보험사에서 방어도중 합의 종결
- 손해배상금 : $150만
- 사고처리비용 : $25만

4. 제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 개 념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 회수조치할 경우 회수에 따른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제조물을 사용, 소비한 결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 질병, 사망사고를 야기하게 되거나, 또는 유체물을 파괴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 사실, 또는 입히게 될 사실을 피보험자가 확인하는 경우, 또는
- 보험기간동안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이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상품)의 회수를 명령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상품)의 제조, 혼합, 포장, 라벨링하는 과정에서 실수
  - 보험목적물(상품)의 제조상의, 디자인상의, 또는 사용상의 설명 하자
- 범죄인에 의한 금품요구(선택담보)

5. 제조물보증배상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Ins.)

■ 개 념 : 하자담보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제품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 손실 을 보상하며, 선택담보로 제품의 수리기간중의 사용손실도 담보가능

■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신고사항에 기재된 상품이나 생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그 상품이나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대하여

(a) 피보험자의 상품 또는 생산물의 제거, 처리, 개조를 포함한 수리비용 또는

(b) 피보험자의 상품 또는 생산물의 대체가격(최초 판매가격에서 피보험자의 이윤을 뺀 금액)중 적은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보상

[redacted]

1. PL보험요율 산출요소
2. PL보험가입시 보험사 선택
3. PL보험 가입방안

1. PL보험요율 산출요소

■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크게 아래의 두가지 요소가 기준이 됨
1) 보험조건 :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2) 담보대상물 : 담보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

■ 보험조건
: 높은 보상한도액과 낮은 공제금액은 보험료의 상승요소

■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 소송이 잦은 지역(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이 포함될 경우 여타지역에 비하여 보험료가 높음. 특히 미주지역은 여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담보생산물
: 담보생산물이 어떠한 종류이냐 즉, 자동차 관련제품 등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음.

■ 매출액과 정산요율 및 확정요율
: 원칙상 매출액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많아짐.

2. PL보험가입시 보험사의 선택

■ PL보험가입시 보험사 선택의 중요성
- 비교적 높은 보험료 :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 복잡한 보험조건 : 최적의 보험프로그램의 설계
- 클레임서비스의 품질에 판결결과 등이 다를 수 있음.
- Long-tail Claim :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고려

■ 보험사 선정시 고려사항
- 해당 제조물에 대한 PL보험 인수 경험 및 규모
- PL클레임서비스의 경험, 평판
- World-wide Network : 해외 PL사고에 대한 전문적 대응
-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3. PL보험가입 방안

개별계약 VS. 단체계약

구 분	개별계약	단체계약
개 요	보험계약자 VS. 보험사	다수 피보험자 VS. 보험사
가입주체	개별기업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단체
특 징	자율적 보험가입	개별계약 대비 보험료 할인효과
비 고	일반적인 보험계약 형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동종위험군을 가진 집단이 대표창구를 정하여 보험사와 계약하는 형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단체를 통한 일괄 단체계약이 유리함

3. PL보험가입 방안 - 단체보험계약

단체계약 보험프로그램의 장점

저렴한 보험료 적용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단체계약할인이 적용됨으로써 개별로 각각의 PL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가격면에서 유리

보험조건의 개선 효과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협력회사에 보다 유리한 보험조건 및 담보범위 선택가능

위험관리 의식의 고취
단체보험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회원의 위험관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회원사간 결속력 강화
단체보험프로그램을 통한 위험관리방안의 구성을 통해 각 회원간의 공통된 issue가 발생함으로써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가 증가하며 이를 통해 상호 결속력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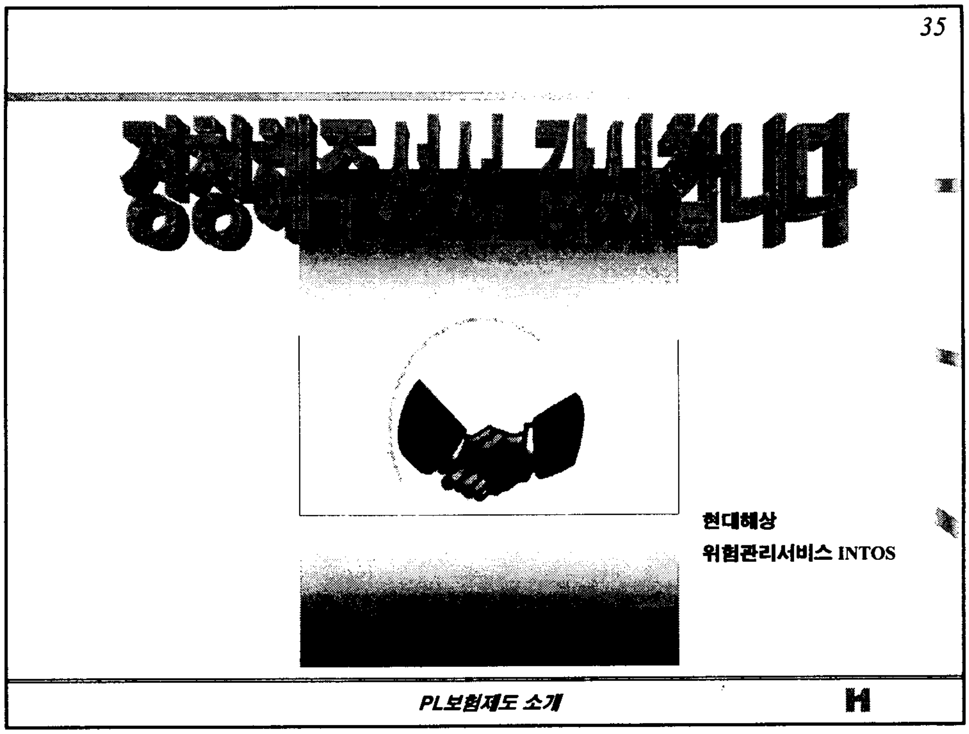
35
현대해상
위험관리서비스 INTOS
PL보험제도 소개